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89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460호	김용태의원	2025. 5. 9.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5.9.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4440호	고민정의의원	2025.11.20.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교재산 활용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는 장기간 미활용 폐교재산인 경우에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활용용도 확대, 활용 절차의 간소화 등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료 감액·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조, 제5조제1항·제3항·제5항).

- 나.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분례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 다.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 라.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마.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4조제3항·제4항 신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④ 시·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를 “가격평정 및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으로,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생략)</p> <p>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10. <u>“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하며, 주민 의견</u></p>

<신 설>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립을 할 수 있다.

③ 시·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 설>

④ 시·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

-----귀농어·
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가격평정 및 절차-----

-----.

③ -----

-----.

1. -----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
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
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
하려는 경우

-----소득증대시설, 귀농어
· 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
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
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
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
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공공체육시
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3.·4. (생략)
<신설>

3.·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
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
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
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생략)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
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

1. -----

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다. (생략)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4. (생략)

<신설>

<신설>

<삭제>

나.·다. (현행과 같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3.·4. (현행과 같음)

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